

의정부지방법원 2024. 10. 22 선고 2023가단132039 판결 [진정명의회복 원인 소유권이전등기
청구 등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일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조경훈

피 고 1. B

2. C

3. D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형규

변 론 종 결 2024. 9. 24.

판 결 선 고 2024. 10. 22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양주시 E,F,G,H 지상 I동 일반철골구조 일반철골 및 경량판넬지붕 단층 운동시설(승마장 비영리체육시설) 483.49㎡ 중 각 1/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항 및 각 4,670,120원과 2023. 11. 23.부터 양주시 E 토지에 관한 피고들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335,800원씩을 지급하라.

이 유

원고는 양주시 E 토지 소유자인데, 2018. 무렵 자신의 비용을 들여 E,F,G,H 지상에 I동 일반철골구조 일반철골 및 경량판넬지붕 단층 운동시설(승마장 비영리체육시설) 483.49㎡를 건축하였고, 피고들은 2022. 9. 21. 원고의 운동시설에 관하여 각 1/3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 다툼이 없다.

원고가 비용을 들여 건축한 운동시설은 원고의 소유이고, 피고들이 운동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, 피고들은 소유권자인 원고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(원고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, 명의신탁약정을 기초로 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1993. 12. 14. 선고 93다19139 판결의 판시 취지는 1995. 7. 1.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, 그 판결의 판시 취지를 근거로 삼아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).

한편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들 명의 운동시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고 피고들은 운동시설에 대한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들이 운동시설의 공유자로서 운동시설의 부지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, 달리 피고들이 원고 소유인 E 토지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.

원고의 청구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만 받아들인다.

판사 박이규